

서기 1958년 6월 6일 <제 3종우편물인가> (매주월요일발행)

등록번호 제 1,238 호
등록년월일 서기 1947년 8월 26일

제 1599 호

전라남도보

서기 1984년 3월 26일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발행소: 광주시 광산동 13
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
우편번호 500

목 차

1. 전라남도 규칙 제 137 호 전라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
2. // 훈령 제 641 호 전라남도지역안보기여상시상규정
// // 제 642 호 전라남도에산집행심의회훈령중개정
3. // 고시 제 40 호 '8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제 2 회 추경예산결정
// // 제 41 호 돼지고기연등가격조정
// // 제 42 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제 3 회 추가세입
세출예산결정
// // 제 43 호 공유수면매립면허
4. // 공보 제 81 호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사항변경허가
// // 제 82 호 '84 양식어장이용개발확정
// // 제 83 호 축산물작업장 (일반도계장) 준공
// // 제 84 호 '84 간호보조원자격시험합격자
// // 제 85 호 운전자 정기교육실시
// // 제 86 호 '84 제 1 회 관광종사원자격시험시행계획
// // 제 87 호 '84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확정
// // 제 88 호 양식어업면허연장허가
// // 제 89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구 례 군 // 제 10 호 화엄사집단시설지구정비공원사업시행허가
◎ 기본측량사업계획

5. 사 령

◎ 순간적인 공사망각 두고두고 후회한다.
◎ 당 신 의 행락모습 아들딸이 지켜본다

규칙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 3. 26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규칙 제 137 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공무원의 정원) 제 1 항 별표 1 및 제 2 항 별표 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감축정원의 현원은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別表”

地方公務員定員表

(1984 . 3 . 現在)

“別表1”

“別表2”

急 類 別		合 計							
機 關 別	職 種 別	計	一 般 職	別 定 職	特 定 職	研 究 職	專 門 職	技 能 職	雇 傭 職
道 廳 計 (現 行)		1,417	741	40	24	50	10	69	483
" (改 正)		1,417	741	40	24	50	10	69	483
道 本 廳 計 (現 行)		756	479	15	6		10	17	229
" (改 正)		756	479	15	6		10	17	229
會 計 課 (現 行)		107	18	1			3	6	79
" (改 正)		$\begin{matrix} +15 \\ 122 \end{matrix}$	$\begin{matrix} +3 \\ 21 \end{matrix}$	1			3	$\begin{matrix} +9 \\ 15 \end{matrix}$	$\begin{matrix} +3 \\ 82 \end{matrix}$
保 健 課 (現 行)		72	41				7	9	15
" (改 正)		$\begin{matrix} \triangle 15 \\ 57 \end{matrix}$	$\begin{matrix} \triangle 3 \\ 38 \end{matrix}$				7	$\begin{matrix} \triangle 9 \\ - \end{matrix}$	$\begin{matrix} \triangle 3 \\ 12 \end{matrix}$

一般職																
3級			4級													
小計	副理事官		小計	書記官	農林技正	醫務技正	土木技正	行政・農林	行政・土木	行政・土木・機械	農林・農業・研究				小計	行政事務官
1	1		12	7			1	1	1	1	1				161	100
1	1		12	7			1	1	1	1	1				161	100
1	1		5	5											127	80
1	1		5	5											127	80
															5	3
															(+1) 6	3
															5	1
															(△1) 4	1

一般職																	
5 級																	
機械技佐	畜産技佐	獸醫官	醫務技佐	藥務技佐	保健技佐	看護技佐	船舶技佐	水産技佐	土木技佐	建築技佐	地籍技佐	農林技佐	行政・通信	探鑛・造船	行政・電算	行政・保健	電氣・化工
3	2	1		1	2		1	4	15	2		16	1		3	1	1
3	2	1		1	2		1	4	15	2		16	1		3	1	1
2	1	1		1	2		1	4	9	1		11	1		3	1	1
2	1	1		1	2		1	4	9	1		11	1		3	1	1
1										1							
1							(+1) 1			1							
				1	1		1										
				1	1		(Δ)1										

一 般 職																	
5 級								6 級									
電氣・採鑛・造船	行政・土木	土木・建築	行政・保健・看護	行政・別定(秘書)	行政・農林	行政・建築	行政・畜産	小計	行政主事	機械技士	電氣技士	化工技士	造船技士	採鑛技士	農林技士	畜産技士	獸醫士
1		2	1	1	1	1	1	209	106	10	2	1	1		19	2	1
1		2	1	1	1	1	1	209	106	10	2	1	1		19	2	1
1		2	1	1	1	1	1	133	63	6	2	1	1		8	1	1
1		2	1	1	1	1	1	133	63	6	2	1	1		8	1	1
								4	2	1							
								4	2	1							
			1					12	1								
			1					12	1								

一般職																	
6 級																	
藥 務 士	保 健 技 士	看 護 技 士	船 舶 技 士	水 産 技 士	土 木 技 士	建 築 技 士	地 籍 技 士	通 信 技 士	物 理 技 士	通 信 士	行 政 ・ 電 算	別 定 ・ 電 算	藥 務 ・ 保 健	行政・別定(秘書)			
	9	5		3	24	8		3			5	7	2	1			
	9	5		3	24	8		3			5	7	2	1			
	6	5		3	12	6		3			5	7	2	1			
	6	5		3	12	6		3			5	7	2	1			
						1											
						1											
	4	5											2				
	4	5											2				

一 般 職																	
7 級																	
小	行	機	電	化	造	採	農	畜	獸	藥	保	看	船	水	土	建	地
計	政	械	氣	工	船	鑛	林	產	醫	務	健	護	舶	產	木	築	籍
補	主	技	技	技	技	技	技	技	士	士	士	士	技	技	技	技	技
士	事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士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補
227	106	9	3	2			25	4	4	1	14	2	1	5	30	10	
227	$\begin{matrix} +2 \\ 107 \end{matrix}$	9	3	2			25	4	4	1	$\begin{matrix} \Delta 2 \\ 12 \end{matrix}$	2	1	5	30	10	
147	76	5	2	1			6	3	2	1	12	1	1	3	18	5	
147	$\begin{matrix} +2 \\ 76 \end{matrix}$	5	2	1			6	3	2	1	$\begin{matrix} \Delta 2 \\ 10 \end{matrix}$	1	1	3	18	5	
7	4		1										1			1	
$\begin{matrix} +2 \\ 9 \end{matrix}$	$\begin{matrix} +2 \\ 6 \end{matrix}$		1										1			1	
12										1	6	1					
$\begin{matrix} \Delta 2 \\ 10 \end{matrix}$										1	$\begin{matrix} \Delta 2 \\ 4 \end{matrix}$	1					

一 般 職																	
7 級								8 級									
通 信 技 士 補	通 信 士 補	別 定 ・ 電 算	別 定 ・ 保 健	行 政 ・ 電 算				小 計	行 政 書 員	機 械 技 員	電 氣 技 員	化 工 技 員	造 船 技 員	採 鑛 技 員	農 林 技 員	畜 産 技 員	獸 醫 員
2		4	4	2				127	49	6	1				6	3	
2		4	4	2				127	49	6	1				6	3	
1		4	4	2				66	14	4						3	
1		4	4	2				66	14	4						3	
								2	1	1							
								2	1	1							
			4					12									
			4					12									

[illegible]

一 般 職							別 定 職						特 定 職				
9 級							計	4	5	6	7	8	計	消 防 領 (5 級)	消 防 警 (6 級)	消 防 衛 (6 級)	消 防 長 (7 級)
化 工 技 員 補	農 林 技 員 補	畜 産 技 員 補	看 護 ・ 保 健					級	級	級	級	級					
	3						40		6	6	15	13	24	2	2	3	2
	3						40		6	6	15	13	24	2	2	3	2
							15		4	5	2	4	6	2	2	1	1
							15		4	5	2	4	6	2	2	1	1
							1				1						
							1				1						

特 定 職		研 究 職				専 門 職				技 能 職					雇 備 職		
消 防 校 (8級)	消 防 士 (9級)	計	研究官		研究士		計	醫 師	헬 기 조 종 사	헬 기 정 비 사	計	6 等 級	7 等 級	8 等 級		9 等 級	10 等 級
			農 業	保 健	農 業	保 健											
4	11	50	8	6	25	11	10	7	1	2	69		13	43	8	5	483
4	11	50	8	6	25	11	10	7	1	2	69		13	43	8	5	483
							10	7	1	2	17		7	7	3		229
							10	7	1	2	17		7	7	3		229
							3		1	2	6		2	3	1		79
							3		1	2	△9 15		△5 7	△4 7	1		△3 82
							7	7			9		5	4			15
							7	7			△9		△5	△4			△3 12

훈 령

전라남도 지역안보 기여상 시상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3 월 19 일

전 라 남 도 지 사 김 창 식

전라남도 훈령 제 641 호

전라남도 지역안보 기여상 시상규정

전라남도 지역안보 기여상 시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내 근무하는 경찰관 또는 소방관 등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방 본도 지역사회 안정을 기함에 있다.

제 2 조 (상의명칭) 이 규정에 의한 상은 “전라남도 지역안보 기여상” (이하 안보상)이라 한다.

제 3 조 (수상후보자 추천대상) 다음 각호의 재직중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추천한다.

1. 경찰공무원
2. 소방공무원
3.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대원
4. 방범대원

제 4 조 (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국 각 과장

2. 경찰서장

3. 소방서장

제 5 조 (대상공적) 수상의 대상공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안정 저해요인을 해소하거나 와해, 순화, 감시 또는 기록관리 유지에 공헌한 자
2. 지역안정을 해하는 집단사태를 와해 또는 진압에 특히 공헌한 자
3. 선교 자유보호와 학원 면학 분위기 정착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특히 공헌한 자
4. 유괴 인질 중대한 경제사범의 검거 및 예방에 특히 공헌한 자
5. 중대한 수재, 화재등 재난에서 인명과 재산을 긴급 구조한 공이 현저한 자

제 6 조 (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 전원 차석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수상인원은 반기 4명이내로 하고 수상대상이 없을 때에는 이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안보상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4명으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1. 위 원 장 : 부지사 (당연직)

2.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경찰국장 (당연직)

3. 위 원 : 내무국장, 정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매회 도지사가 지명한 실국장 및 경찰국 과장중에서 임명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경찰국 계장급으로 지명한다.

제 8 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연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 위원회 소집 및 회무기록을 담당한다.

제 9 조 (추천 및 시상시기) 추천권자는 소정의 추천서류를 매년 5.30 과 11.30 2 회 심사위원회 (간사로 지명된 경찰국 계) 에 제출하고 시상일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추천서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정부승인양식) 2 부
2. 인사기록카드사본 2 부
3. 추천서 (별지 1 호 서식) 2 부
4. 공적요약서 (별지 2 호 서식) 2 부
5. 사진 (명함판 상반신) 2 장
6. 기타 공적에 참고자료

제 11 조 (심사기준) ①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공적이 지역안정에 현저한자를 선정한다.

② 다음에 해당된자는 안보상을 수여하나 제 12 조에 의한 인사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상계되지 않았거나 징계 계류중에 있는 자
2. 직위해제중이거나 또는 정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거나 정년 연장된 자

제 12 조 (특 전) ① 본상 수상경찰관 및 소방관중 특히 공이 현저한 자 약간명을 경사 (소방사) 이하까지 특별 승진케 할 수 있다.

② 본상 수상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요원 및 방범대원은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제 3 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 13 조 (예 외 사 항) 안보상의 시상권자보다 상위훈격의 훈·포상 수상 대상의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4 조 (기 타 사 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추 천 서

본 적 :

주 소 :

사 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당 세)

위는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지역안정에 기여한 공이 현
저하여 전라남도 지역안정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 1. 공적조서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공적서 요약

4.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추천자 직 성명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공 적 요 약 서

본 적 :

주 소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당 세)

공 적 내 용

상 장

지역안정상

소 속 :

계 급 :

성 명 :

귀하는 본도 지역사회안정에 공헌한바 지대하여
제 회 지역안정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 ○ ○ ①

(상패로 제작한다)

전라남도 훈령 제 642 호

전라남도 예산집행심의회 훈령중 개정 규정

전라남도 예산집행 심의회 훈령중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심의회의 구성)

제 2 항 : 위원중 민방위국장 다음에 “ 기획담당관 ” 을 삽입하고 “ 기획
담당관 ” 다음에 “ 감사담당관 ” 을 삽입하고 감사과장을 삭제
한다.

제 7 조 (간사)

제 2 항 : 심의회 간사는 “ 기획담당관 ” 이 되며를 “ 예산계장 ” 으로 하
고, 서기는 “ 예산계장 ” 으로 한다를 “ 관계실무자 ”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고 시

전남 고시 제 40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8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제 2 회 추경예산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고시한다.

1984. 3. 22

전 라 남 도 지 사

예 산 총 칙

제 1 조 1984 년도 전라남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1,827,000 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세 입 세 출 예 산 관 별 조 서

○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사업외 수입	1,827,000	827,000	1,000,000
○ 새마을 성금	1,800,000	800,000	1,000,000
○ 이월금	27,000	27,000	—
세 입 합 계	1,827,000	827,000	1,00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사 업 비	1,827,000	827,000	1,000,000
세 출 합 계	1,827,000	827,000	1,000,000

전라남도 고시 제 41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 (농수산부 훈령 제 561 호) 제 9
조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함.

1984. 3. 23.

전 라 남 도 지 사

가. 지역별 연동가격

적용지역	단 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박 피 지 역	600 그람	1,300 원	1,400 원	100 원	
미박피지역	600 그람	1,200 원	1,300 원	100 원	

나. 시행일자 : 84. 3. 26. 끝.

전라남도 고시 제 42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8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제 3 회 추경예산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고시한다.

1984. 3. 27.

전라남도지사

예산총칙

제 1 조 1984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1,847,000 천원으로 한다.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세 입 세 출 예 산 관 별 조 서

○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사 업 외 수 입	1,847,000	1,827,000	20,000
○ 새마을 성금	1,820,000	1,800,000	20,000
○ 이 월 금	27,000	27,000	
세 입 합 계	1,847,000	1,827,000	2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사 업 비	1,847,000	1,827,000	20,000
세 출 합 계	1,847,000	1,827,000	20,000

전라남도 고시 제 43 호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하였기
공유 수면 매립법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1984. 3.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면허년월일 : 1984. 3. 27.
2. 면 허 번 호 : 전남 농지 제 4340 호
3. 면허를 받는자 : 광주시 서구 월산 4 동 939-25 강대련외 5 인
4. 매립 장소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지선
5. 매립 면적 : 1,665,616 m^2 (조성면적 1,196,952 m^2)
6. 매립 목적 : 농지 조성 (답, 전)
7. 매립 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3년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 81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 허가하였기 공고함.

1984. 3. 19.

전 라 남 도 지 사

- 허가번호 : 149 - 3 - 1
- 작업장명 : 한국냉장(주) 축산물 가공장
- 소재지 :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44 - 7
- 변경사항 : 주민등록번호
 - 당초 : 291204 - 1019315
 - 변경 : 280111 - 1053010. 끝.

전남 공고 제 82 호

· 농수산부령 제 665 호 제 7 조 규정에 의거 '84년도 양식어장 이용 개발 계획 확정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단 지선별 승인도면은 생산과 및 군도면을 참조할 것.

1984. 3. 21.

전라남도지사

'84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확정표

승인번호	시 군	양식품종	양식방법	지 선	승 인		승 인 조 건	비고
					건 수	면 적		
합 계					652	13,891.2 ^{ha}	신규 4,681.78 ha 이설 9,209.42 ha	
	목포				2	40		
	여수				2	20		
	광양				18	515.2		
	여천				115	1,277.8	이설 559.11 ha 포함.	

고 흥	110	1,713 ^{ha}	이설 892.11 ha 포함.
보 성	5	60	
장 흥	31	1,543	이설 1,123 ha 포함.
강 진	17	571	이설 129 ha 포함.
해 남	9	135	
무 안	8	279	이설 79 ha 포함.
영 광	5	52	
완 도	266	7,234.2	이설 6,427.2 ha 포함.
진 도	26	208	
신 안	38	243	

전라남도 공고 제 83 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5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축산물 작업장 (일반도계장) 준공 검사하였기 공고함.

1984. 3.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준공번호 : 44
2. 작업장명 : 함진물산 (합) 광주도계장
3. 작업장 종류 : 일반도계장
4. 작업장 소재지 : 광주시 북구 양산동 619-18
5. 대 표 : 김 희 도
6. 준공내용
 - 부 지 : 2,102.5 m^2
 - 건 물 : 599.8 m^2 (153.9 m^2 증)
 - 주요시설

보일러	탕지소	자동탈모기	자 동 콤 베 아 시 설	작업대	냉각소
3 대	3 개	3 대	1 식 (능력 1,800 수 11 시간)	3 대	9 개소

전라남도 공고 제 84 호

'84년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합격자공고

'84. 3. 11. 시행 '84년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4. 3. 26.

전 라 남 도 지 사

1. 합격자 명단(번호) : 별지

2. 합격자는 다음에 의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기간 : '84. 4. 2. ~ 4. 14. 까지

나. 교부장소 : 전라남도 서무과 (민원봉사실)

다. 구비서류 : 사진 2매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라. 기타 자격증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증 (미 소지자는 주민등록등·초
본) 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끝.

'84년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합격자명단 (번호)

1	2	3	4	8	10	12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0	61
62	63	64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7	208	209
210	211	212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2
233	234	235	236	237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0	260	262	263	264
267	269	270	271	272	273	273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3	285	286	287
288	290	291	292	294	296	296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8	339	340	341	342
343	345	347	349	350	351	352	353	354	356
357	358	359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5	486	487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9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7	558	559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9	620	621	622
623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4	645
647	648	649	650	651	652	654	655	656	657
658	660	661	662	663	664	666	667	669	670
671	672	673	675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2	693
694	695	696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7	710	711	712	714	715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8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4	755	756	758	760	761	763	764	766	769
770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2
793	794	796	797	798	799	800	801	803	804
805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9	820	821	824	825	826	828	829
830	832	833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50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61	862	863	865	866
868	869	870	872	873	874	875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10	911	912	914
915	916	917	918	919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4	935	936
937	940	941	942	947	948	951	〈이 상 827명〉		

이 하 여 백

전라남도 공고 제 85 호

운전자 정기교육 실시공고

도로교통법 제 44 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되는 운전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가. 정기 적성검사에 해당되는 자

만 3년이 되는 날로부터 전 3개월 후 3개월에 해당되는 자

나. 신규 면허취득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으려는 자

2. 특 참 품

운전 면허증 (시험합격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필기구

3. 참 고 사 항

광주, 목포 및 순천은 신규 면허 취득자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를 혼합 교육.

기타 지역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에 한함.

'84년도 제 1 회관광종사원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

84년도 제 1 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관광 사업법 제 30 조 및 시행규칙 제 28 조 내지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984. 3. 27.

전라남도지사

1. 시험종별

- 가. 국내 관광 안내원
나. 현관·객실·식당 종사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근무시간에 한함)

- 가. 기간 : 84. 4. 2 ~ 4. 4 (3일간)
나. 장소 :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 고시계

3.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일시	장소공고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4. 19.	4. 16.	5. 7.
필기시험	5. 27.	5. 7.	6. 7.

※ 면접,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도게시관에 공고함.

4.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 현재 만 18 세 (66.5.27.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자로서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정신병, 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
다.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구분 시험별	면접시험	필기시험	
		과목	배점비율
국내 관광 안내원	응모, 태도 안내 능력	· 국 사	30 %
		· 한국지리	30 %
		· 관광자원론 (관광지 소개중심)	20 %
		· 일반상식	20 %
현관, 객실 식당종사원	현관, 객실 식당근무에 관한 사항	· 호텔관리개론 (현관, 객실, 식당관리중심)	40 %
		· 영 어	60 %

6. 시험의 방법

시험은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며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 가. 필기시험 면제자 (현관, 객실, 식당 종사원에 한함)
1)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2) 위 1)항과 동등 이상의 외국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수자
3) 중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주한 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국내관광 안내원에 한함)
전문대학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과목중 “ 국사 ” 1 과목만 실시한다.

8.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 통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증지참 (미 지참자는 주민등록초본 1 통)
다. 사진 2 매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라. 학력 증명서 1 통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 증명서 1 통 (")
바. 응시 수수료 1,000 원 (전라남도 수입증지)

9. 응시원서 제출요령

- 가.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규격 봉투에 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한다.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응시원서가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니거나 규격이 미달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 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 (청남색 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도착 지정된 좌석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 고시계로 문의한다.

· 84. 3. 27. 0000 0000 0000

전남 공고 제 87 호

농수산부령 제 665 호 제 7 조 규정에

의거 '84 년도 양식어장

이용 개발 확정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단, 지선별 승인도면은
생산과 및 군 도면을 참조할 것:

1984. 3. 27.

전 라 남 도 지 사

승인번호	시 군	양식품종	양식방법	지 선	승 인		승 인 조 건	비고
					건 수	면 적		
합 계					58	1,745 ^{ha}		
	승 주				55	1,640	신규 428.72 ^{ha} 이설 1,211.28 ^{ha}	
	합 평				3	105	이설	

전남 공고 제 88 호

수산업 및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4. 3. 27.

전라남도지사

면허번호	양식물	어업권자주소	성명	어장위치	면적	연장기간	비고
강진양식 제 32 호	고막, 반지락	강진, 칠량, 영북	김기권	칠량, 만 북	120,000	84. 4.22 — 94. 4.21	
여수양식 제 5 호	피조개	여수, 남산 1396 — 2	박인규	경호, 초 도	50,000	84. 4.16 — 94. 4.15	

전남 공고 제 89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공고(안)

주택건설촉진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대지조성, 임대주택건설) 의 등록신청을 공고하니 다음에 의거 신청할 것.

1. 신청기간 : 84. 4. 10. ~ 84. 4. 14. (5 일간)
2. 등록장소 : 도청 주택과
3. 등록대상 : 주택건설, 대지조성, 임대주택건설사업자
4. 등록기준 : (별도 배부)
 - 해당 시군에 문의
 - 도주택과 : 교환 2 - 0011 ~ 16
 - 광주, 목포, 여수, 여출-주택과
 - 순천, 금성-도시과
 - 각군-건설과

1984. 3. 28.

전라남도지사

구례군 공고 제 10 호

자연공원법 제 2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지리산 국립공원 화엄사 집단시설 지구 정비 공원 사업 시행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 3. 20.

구 려 군 수

(공원사업 시행허가 사항)

1. 사업명 : 화엄사 집단시설 지구 조성을 위한 공원사업
2.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산 14 번지 일원 (지리산 국립
공원 화엄사 집단시설 지구중 일부)
3. 시행자 : 전라남도 구례군수
4. 사업개요
 - 가. 사업구역면적 : 100,929
 - 나. 사업시행면적 : 92,671

1) 용지매수 면적 : 87,939

2) 국공유지 : 4,732 (조성후 환지)

3) 지장물보상 : 건물 36 동 (16 세대) 및 분묘 531 기

다. 조성공사개요

1) 절성토 : 134,670

2) 단지내도로 : 1,190.5 (폭 3 - 8 : 6 개 노선)

3) 급수시설 : 관로 129 (480-250)

배수저 1 기 (용량 1,000 톤)

4) 우수 및 오수관로 : 2,782 (250 - 800)

5) 산마루측구 : 643

6) 농업용수로이설 : 308

7) 전선관지하매설 : 6,274 (전기, 전화 및 가로등용등)

라. 토지이용계획 : 92,671

1) 숙박시설지 : 49,138

○ 유우드호스텔용지 : 7,000

○ 산 장 : 25,000

○ 여 관 : 17,138

2) 상업시설지 : 12,500

3) 공공시설지 : 1,800

4) 기타시설지 : 29,233

○ 주차장용지 : 7,955

○ 녹지기타 : 21,278

마. 건축물 신축

대지면적 : 4,565

건축면적 : 670,25 (연면적 1,167.5)

5. 사업비 : 2,000 백만원

6. 사업시행기간 : '83. 1. 14 ~ '85. 12. 31.

7.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및 건물세목조서 : 별첨

8. 기타 공원 사업 시행도서 : 게재생략. 끝.

기 본 측 량 사 업 제 회

1. 사업명

삼각점복구, 정밀삼각측량, 정밀수준측량 및 수준점복구, 연안해역 기본
조사, 중력측량, 인공위성측량, 지차기측량, 천문측량

2. 작업지역도 : 별첨 인덱스 참조

3. 작업기간 : 84. 3 ~ 84. 12

4. 작업지역 :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일부지역

5. 작업종사자 소지품 및 장비

가. 자동차

나. 정밀경위의 (T-3, T-2)

다. 거리측정기 (광파측 거의)

라. 무전기

마. 지도, 삼, 곡괭이

바. 정밀레벨, 육분의

사. 카메라

아. 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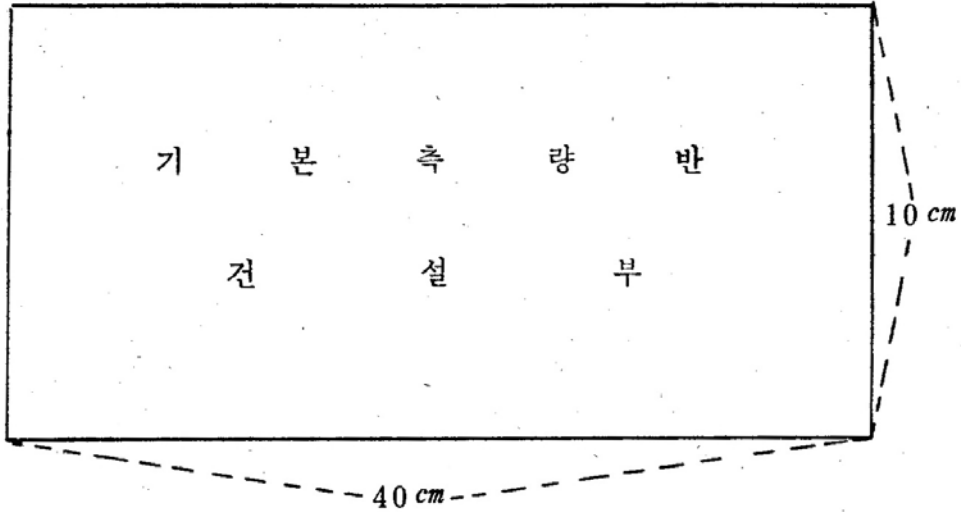
자. 10톤 정도의 목선 (측량기 부착)

6. 작업종사자의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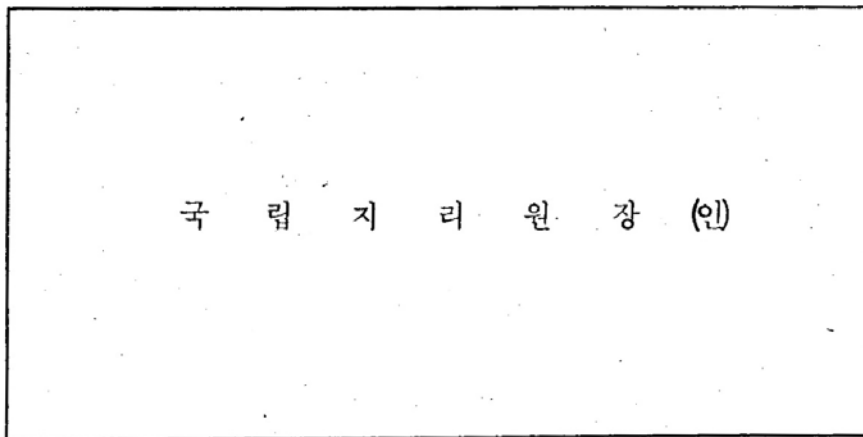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회사신분증, 작업반완장 (별첨 참조)

※ 별첨 : 기본측량작업 종사자 완장

○ 앞 면



○ 뒷 면



※ 색 :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 '84 지도 제작 사업계획

1. 사업명

- 가. 1/5,000 지형도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 나. 1/5,000 지형도 수정을 위한 지리조사
- 다. 1/25,000 기본도 수정을 위한 지리조사
- 라.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수정을 위한 지리조사

2. 작업지역도 : 별첨 인덱스 참조

3. 작업기간 : '84. 3 ~ '84. 12.

4. 작업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 가. 1/5,000 지형도 제작 (930 도엽)

○ 전남 : 진도군

- 나. 1/5,000 지형도 수정 (150 도엽)

- (1) 충남, 대덕군, 대전시, 금산군
- (2) 충북 : 청원군, 충주시
- (3) 경북 : 경주시, 월성군
- (4) 전남 : 광주시, 정선군, 광산군, 나주군, 화순군

- 다. 1/25,000 기본도 수정 (100 도엽)

- 전남 : 곡성군, 승주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군,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금성시, 강진군, 장흥군

5. 작업자 소지품 및 장비

- 가. 소지품

- (1) 지리조사용 항공사진 (국립지리원 반출 확인)
- (2) 1/5,000 지형도 및 1/25,000 기본도

- 나. 장 비

(1) 망원경

(2) 줄 자

(3) 실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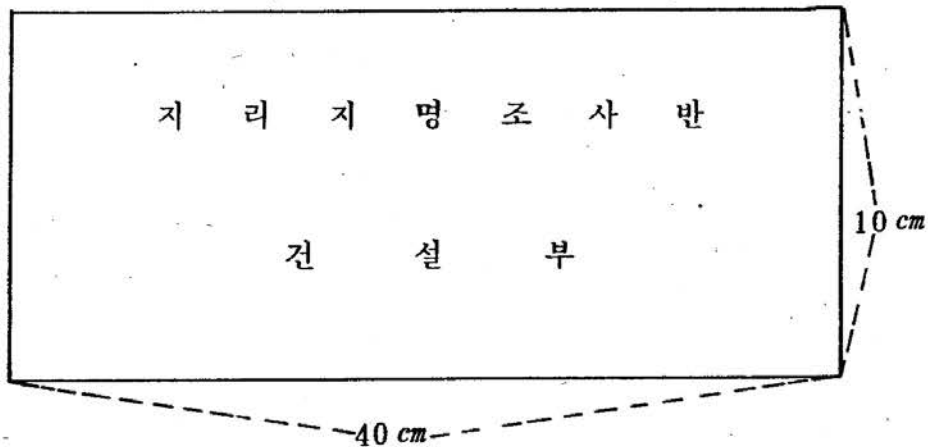
(4) 카메라

6. 작업종사자의 휴대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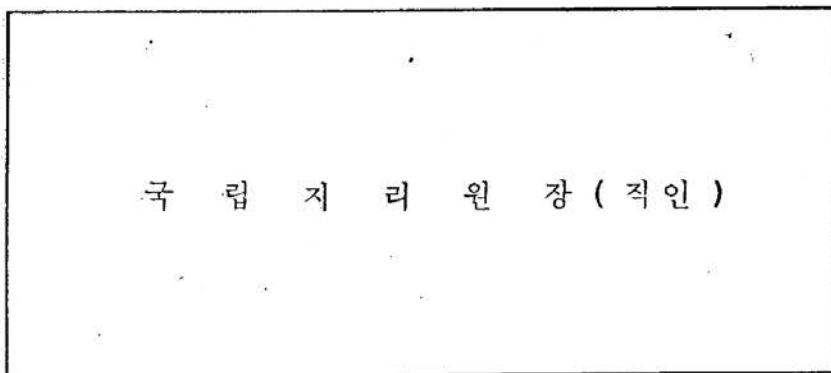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회사신분증, 직업반완장 (별첨참조)

※ 별첨 : 지도제작 작업종사자 완장

○ 앞 면



○ 뒷 면



※ 색 :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

사 령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지함.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이정기	여천지구 출 장 소	보 전 지 소 장	지방의무 기좌시보	4	신		규		
		이	하		여	백			

1984. 3. 22.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지함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송광운	새마을운동 근무를	중앙본부 파견 명함 (파견연장기간 84.3.21 ~ 85.3.20 까지)			내무국 서무과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이	하		여	백			

1984. 3. 21.

전 라 남 도 지 사